

第253回國會
(臨時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5年4月19日(火)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국사교과의 필수과목채택 등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
2. 학교교육 및 국가고시 등에서의 국사과목 비중제고 촉구결의안
3. 유아교육법중개정법률안
4.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5. 高等教育法 一部改正法律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
6.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이상락 의원 대표발의)
7. 高等教育法 一部改正法律案(정부 제출)
8. 高等教育法 一部改正法律案(이규택 의원 대표발의)
9.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10. 教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
11.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審査된案件

1. 국사교과의 필수과목채택 등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김영숙·고경화·고홍길·권오을·김문수·김학송·김희정·박계동·박세환·박순자·박찬숙·박창달·배일도·안경률·안명옥·안상수·유기준·유기홍·이경재·이재오·진영·허천·권경석·안택수·황진하 의원 발의) 2
2. 학교교육 및 국가고시 등에서의 국사과목 비중제고 촉구결의안(박성범 의원 외 20인 발의) 2
3. 유아교육법중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안택수·최인기·이철우·김재원·이군현·허천·권선택·제종길·정성호·이재오·김영덕·노영민·이인기·양형일·정병국·신중식·노현송·이원영·정두언·최경환·서재관·김석준·홍미영·신국환 의원 발의) 2
4.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정봉주·최순영·복기왕·구논회·지병문·이철우·손봉숙·고진화·박순자·안상수·나경원·엄호성·진영·김정훈·이계진·노현송·백원우·최재성·박기춘·안민석·이주호·김영숙·김맹곤·유시민·강기정·홍미영·유기홍·김홍일·이상민·조배숙·이기우·이미경·이인영 의원 발의) 2
5. 高等教育法 一部改正法律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정봉주·최규성·구논회·김성곤·백원우·김홍일·유기홍·나경원·이철우·이인영·김맹곤·최재성·지병문·우원식·박찬석·이목희·양승조·유시민·배기선·조배숙·복기왕·임종석·김선미·강기정·김태홍·김효석·최순영 의원 발의) 2
6.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이상락 의원 대표발의)(이상락·강기정·김교홍·김석준·김춘진·김태년·문병호·복기왕·우상호·유필우·이상경·이종걸·이철우·이해봉·장복심·장향숙 의원 발의) 2
7. 高等教育法 一部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
8. 高等教育法 一部改正法律案(이규택 의원 대표발의)(이규택·안상수·유필우·황우여·주호영·

엄호성 · 정병국 · 윤건영 · 김중환 · 허천 발의) 2

9.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이주호 · 권철현 · 맹형규 · 박세일 · 박순자 · 박재완 · 박찬숙 · 박창달 · 안상수 · 안택수 · 엄호성 · 원희룡 · 유기준 · 윤건영 · 이근식 · 이윤성 · 이해봉 · 이해훈 · 정문헌 · 최구식 의원 발의) 2

10. 教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이주호 · 권철현 · 맹형규 · 박세일 · 박순자 · 박재완 · 박찬숙 · 박창달 · 안상수 · 안택수 · 엄호성 · 원희룡 · 유기준 · 윤건영 · 이근식 · 이윤성 · 이해봉 · 이해훈 · 정문헌 · 최구식 의원 발의) 2

11. 高等教育재정교부금법안(박찬석 의원 대표발의)(박찬석 · 이시종 · 변재일 · 조정태 · 이미경 · 백원우 · 조정식 · 김형주 · 우원식 · 문희상 · 유인태 · 정청래 · 임종인 · 오제세 · 김중환 · 정갑윤 · 권경석 · 안택수 · 신학용 · 박상돈 · 최규성 · 선병렬 · 김한길 · 김맹곤 · 한병도 · 천영세 · 단병호 · 강기갑 · 김낙성 · 김종인 · 신중식 · 유재건 · 제종길 · 장향숙 · 김혁규 · 한명숙 · 염동연 · 유승희 · 홍창선 · 박명광 · 임인배 의원 외 10인 발의) 2

(14시19분 개의)

○위원장 황우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시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사교과의 필수과목채택 등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김영숙 · 고경화 · 고흥길 · 권오을 · 김문수 · 김학송 · 김희정 · 박계동 · 박세환 · 박순자 · 박찬숙 · 박창달 · 배일도 · 안경률 · 안명옥 · 안상수 · 유기준 · 유기홍 · 이경재 · 이재오 · 진영 · 허천 · 권경석 · 안택수 · 황진하 의원 발의)

2. 학교교육 및 국가고시 등에서의 국사과목 비중제고 촉구결의안(박성범 의원 외 20인 발의)

3. 유아교육법중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 · 안택수 · 최인기 · 이철우 · 김재원 · 이근현 · 허천 · 권선택 · 제종길 · 정성호 · 이재오 · 김영덕 · 노영민 · 이인기 · 양형일 · 정병국 · 신중식 · 노현송 · 이원영 · 정두언 · 최경환 · 서재관 · 김석준 · 홍미영 · 신국환 의원 발의)

4.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정봉주 · 최순영 · 복기왕 · 구논회 · 지병문 · 이철우 · 손봉숙 · 고진화 · 박순자 · 안상수 · 나경원 · 엄호성 · 진영 · 김정훈 · 이계진 · 노현송 · 백원우 · 최재성 · 박기춘 · 안민석 · 이주호 · 김영숙 · 김맹곤 · 유시민 · 강기정 · 홍미영 · 유기홍 · 김홍일 · 이상민 · 조배숙 · 이기우 · 이미경 · 이인영 의원 발의)

5. 高等教育法 一部改正法律案(정봉주 의원 대

표발의)(정봉주 · 최규성 · 구논회 · 김성곤 · 백원우 · 김홍일 · 유기홍 · 나경원 · 이철우 · 이인영 · 김맹곤 · 최재성 · 지병문 · 우원식 · 박찬석 · 이목희 · 양승조 · 유시민 · 배기선 · 조배숙 · 복기왕 · 임종석 · 김선미 · 강기정 · 김태홍 · 김효석 · 최순영 의원 발의)

6.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이상락 의원 대표발의)(이상락 · 강기정 · 김교홍 · 김석준 · 김춘진 · 김태년 · 문병호 · 복기왕 · 우상호 · 유필우 · 이상경 · 이종걸 · 이철우 · 이해봉 · 장복심 · 장향숙 의원 발의)

7. 高等教育法 一部改正法律案(정부 제출)

8. 高等教育法 一部改正法律案(이규택 의원 대표발의)(이규택 · 안상수 · 유필우 · 황우여 · 주호영 · 엄호성 · 정병국 · 윤건영 · 김중환 · 허천 발의)

9.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이주호 · 권철현 · 맹형규 · 박세일 · 박순자 · 박재완 · 박찬숙 · 박창달 · 안상수 · 안택수 · 엄호성 · 원희룡 · 유기준 · 윤건영 · 이근식 · 이윤성 · 이해봉 · 이해훈 · 정문헌 · 최구식 의원 발의)

10. 教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이주호 · 권철현 · 맹형규 · 박세일 · 박순자 · 박재완 · 박찬숙 · 박창달 · 안상수 · 안택수 · 엄호성 · 원희룡 · 유기준 · 윤건영 · 이근식 · 이윤성 · 이해봉 · 이해훈 · 정문헌 · 최구식 의원 발의)

11. 高等教育재정교부금법안(박찬석 의원 대표발의)(박찬석 · 이시종 · 변재일 · 조정태 · 이미경 · 백원우 · 조정식 · 김형주 · 우원식 · 문희상 · 유인태 · 정청래 · 임종인 · 오제세

· 김충환 · 정갑윤 · 권경석 · 안택수 · 신학용 · 박상돈 · 최규성 · 선병렬 · 김한길 · 김맹곤 · 한병도 · 천영세 · 단병호 · 강기갑 · 김낙성 · 김종인 · 신중식 · 유재건 · 제종길 · 장항숙 · 김혁규 · 한명숙 · 염동연 · 유승희 · 홍창선 · 박명광 · 임인배 의원 외 10인 발의)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영숙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사교과의 필수과목채택 등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박성범 의원이 발의한 학교교육 및 국가고시 등에서의 국사과목 비중제고 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정봉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의사일정 제5항 정봉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이상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이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박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이상 11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친 이후에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국사교과의 필수과목채택 등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입니다.

국사교과의 필수과목채택 등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중국과 일본의 우리 역사에 대한 심각한 왜곡 현상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에 상처를 주고 민족의 뿌리인 역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중국과 일본의 역사 도발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역사를 도둑질 당한다고 분개하였고 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으나 곧 냄비에 끓인 물 식듯 시들해지

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국가관과 정체성이 투철해야 할 국가 공무원 시험에 국사과목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민족의 정체성과 국가관을 심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국사과목이 초등학교에서는 사회과목에 편제되어 있고, 중학교에서는 근대사 전까지 국사가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교육부는 수업시간을 2001년부터 주당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더욱이 고2부터는 한국 근·현대사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한 학생이 2004년에는 전체의 32.6%에서 2005년도에는 28.1%로 4.5% 가량이 감소하여 국사과목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응답자 중 25.6%가 ‘자랑스럽지 않다’고 답변해서 국민 4명 가운데 1명꼴로 우리 역사가 부끄럽다는, 자랑스럽지 않다는 의식을 가진 상황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민족의 자긍심과 긍지를 키우는 국사교육을 통해 올바른 민족사관이 정립되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뿌리 찾기 교육으로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가관을 제고하고 충성심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공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국사교육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국가교육 강화를 위해 국사교과를 독립교과 및 필수과목으로 편제하고 초·중등 및 대학 교육과정에서 국사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우리 역사교육을 통해 투철한 국가관이 정립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가 인력양성을 위해 행정·사법·외무고시 등 국가고시에서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국사 연구 활동을 강화하여 중국과 일본 등의 역사 왜곡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내외에 알려야 한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잃은 민족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으며 백암 박은식 선생은 “민족이나 국가의 혼은 그 나라의 역사에 담기는 것이며, 따라서 국혼이 존재하고 국교와 국사가 없어

지지 않는 한 나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며 자국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역사는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민족의 자산이며 나라의 보배입니다.

본 결의안이 통과되어 안일한 정부 측에 우리 역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촉구시키고 우리 역사교육이 지라나는 학생들의 마음에 민족의 자긍심과 뿌리를 굳건히 심어 주어 중국과 일본의 불순한 역사 왜곡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학교교육 및 국가고시 등에서의 국사과목 비중제고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박성범 의원의 서면 대체 요청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아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역시 안상수의원의 서면 대체 요청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봉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봉주 의원의 서면 대체 요청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역시 발의자인 김춘진 의원의 서면 대체 요청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김진표 교육부총리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학의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학 협력을 전담하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전공교육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사학위 과정

과 석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국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학위 수여의 취소 등에 대해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교원은 교육·연구 이외에 산학 협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산학 협력을 전담하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산학협력 전담교원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학사학위 과정 및 석사학위 과정의 통합과정 설치 근거와 수업 연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대학에 학사학위 과정 및 석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동 과정의 수업 연한은 두 과정의 수업 연한을 합한 것보다 1년을 단축한 기간 이상으로 하고, 입학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거나 당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학위 수여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위를 수여한 대학의 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안의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여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역시 대표발의자인 이규택 의원의 서면 대체 요청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이주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주호 의원입니다.

먼저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던 대학 수험능력시험 부정행위 파동에서 나타나듯 최근 입시 부정행위는 학생 개인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조직화되고 매년 대물림되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 입학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상관없다는 목적지상주의만 팽배할 뿐 학업을 함에 있어 학습하는 기본자세와 학습윤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 주는 불행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사전 예방 및 재발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입시를 치르는 당사자들이 대부분 미성년자임을 고려했을 때 처벌과 제약 위주의 강압적 조치보다는 잘못된 가치관과 태도를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선도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입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적극적인 처방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므로 실제로 상기(上記)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연도 시험이 무효가 된 학생이 다시 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인성교육 및 사회봉사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부정행위의 비윤리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학습하는 기본자세와 학습윤리 의식을 확립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교육 위원님!

교육이 처벌과 다른 것은 문제를 회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덕적 위기에 처한 우리 학생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교육적 처방입니다.

부디 본 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기에 앞서 학문하는 자세와 방법, 보다 근본적으로는 삶의 기본태도를 가르쳐야 하는 곳입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가치관과 태도는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수능 부정 파동, 내신조작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불거져 나온 검정고시 부정, 그리고 이처럼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암암리에 묵인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과제물 베끼기부터 심지어 대학교수들의 논문 표절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계는 온갖 부정과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가장 윤리적이어야 할 학교가 이와 같은 부정행위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내면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기본법에는 학습자의 자세로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단순한 규정만 있을 뿐 기본자세와 양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교원에 관해서도 교원의 신분·지위 보장과 자질 및 중립성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교원의 기본 책무라 할 수 있는 학생 지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학교의 교칙 준수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학생들이 타의와 타율에 의하지 않고도 스스로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원의 신분과 지위 보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토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일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하여 공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습윤리를 적극적으로 확립하도록 하고 교원으로 하여금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의 습득을 도우며 학생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에게는 학습자로서의 윤리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학교에서 학문적 양심을 토대로 학업과 연구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법에는 학습자의 의무로 학교 교칙의 준수,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방해 및 학내질서 문란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학습자로서의 윤리 준수를 추가하여 학습자로서 갖추어야 할 보다 근본적인 자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

둘째, 교원의 신분·지위 보장과 자질 및 중립성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학생의 학습윤리와 인성에 대한 교육을 할 의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교원에게 학생의 학습윤리 확립, 지식 습득, 적성개발에 필요한 교육을 할 법적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업 및 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절·부정행위를 근절하여 올바른 학습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학습윤리 확립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교육 위원님!

학교가 올바른 학습 풍토를 조성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회 전반의 도덕성 확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근본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우리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근간을 수립하는 모태인 교육기본법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본 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대표발의한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교육 위원 여러분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국가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바로 대학의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정부는 대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예산을 보면 총 27조 9800억 중 초·중등 교육에 86.7%를 쓰고 대학 교육에는 12.4%밖에 쓰지 않습니다.

교육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교사·교수의 수를 보면 1인당 학생 수에서도 초등학교는 27명, 중학교는 18명, 고등학교는 15명인데 비해 대학은 48명이나 됩니다.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하버드대학이 13만 불, 동경대학이 7만 5000불인데 반해서 우리

나라의 명문대인 서울대학은 1만 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계 100위권 대학 안에 미국은 34개, 일본은 4개, 중국은 2개가 들어가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도 들어가는 대학이 없습니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GDP의 5%가 교육예산으로 할당되고 있지만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그 10분의 1인 0.43%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내국세의 19.4%까지 지방교육 재정을 확대함으로써 각 부별 실링이 정해지는 지금의 톱다운 방식 예산 배정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학 교육 예산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자동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초·중등 교육에 비해 대학교육 예산은 해마다 예산 투쟁을 해야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서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과 국가 발전을 선도해 나갈 고급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대학교육 재정의 확보와 지원정책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교육도 법적 장치에 의해서 자동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은 GDP의 약 1%를 대학 교육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GDP의 1%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국세 총액의 7.6%를 법적으로 확보하여 대학 교육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 법을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충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일괄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충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영숙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사교과의 필수과목채택 등 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으로서 주문의 전문에 관련된 검

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 프로젝트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또 교과서 왜곡행위 등 중국과 일본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왜곡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역사의 왜곡은 민족정체성 논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역사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외교적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외교적 역량의 결집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역사교육 강화 방안 또한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최근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국사 수업시간 축소라든지 공무원임용시험에서의 국사과목 폐지 등 한국사에 대한 정부 정책이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는 다소 거리가 먼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역사교육의 내실화 및 강화를 촉구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국사교과서의 독립 교과 및 필수과목 채택과 국사시간의 대폭 확대를 촉구하는 주문 1과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 이후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는 국사가 사회교과에 통합되어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때 조선 후기까지의 역사만을 필수과목으로 배울 뿐 2·3학년 과정인 근·현대사를 선택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국사교육이 어렵게 되었으며 수업시간마저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단축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현상을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회라는 통합 과목의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사회를 구조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 인식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부분적 개정을 통해서 한국사를 포함한 역사를 독립 교과목으로 편성하는 방안과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국사와 2·3학년의 선택과목인 근·현대사를 통합해서 필수과목으로 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재량활동 2단

위를 국사수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국사 수업 시간을 6단위로 수정하는 방안,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사·근현대사를 필수로 하는 방안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고시에서 국사의 필수과목을 채택하는 주문2와 관련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현행 공무원시험에서 6급 이하 공채시험은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으나 사법시험에서는 97년부터 국사과목이 폐지되었고 행정고시 제1차 시험의 경우는 2005년부터 과목별 지식평가 방식, 예를 들어서 행정고시의 경우는 헌법, 한국사, 행정법 등입니다. 이와 같은 지식평가 방식에서 영역별 평가 방식인 공직적격성 평가로 개편되어 한국사만을 별도로 필수과목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직적격성 평가 속에 흡수시켜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화 속에서 민족의 구심력 역할을 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역사가관이 확립되고 이의 인식 제고가 뒤따르도록 한국사 관련 출제 비중을 높이고 더 나아가 역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형태의 한국사 시험으로 보완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역사 왜곡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는 촉구해 해당되는 주문 3과 관련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그간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 3월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여 고구려사 및 북방 관련 고대사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2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양국 역사의 쟁점사항을 연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들의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이 점점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하에서는 이러한 역사 왜곡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관련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촉구하는 것은 매우 긴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박성범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학교교육 및 국가고시 등에서의 국사과목 비중제고 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김영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촉구결

의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6페이지의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 등 임용시험에서 국사의 필수 과목 채택 권고를 촉구하는 주문4와 관련된 의견만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기업 신입사원 채용 및 승진 시험 시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할 경우 국민들의 역사의식 제고에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민간기업 등의 신규 임용 시험 과목은 기관 또는 기업에 따라 경영이념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회사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인성 및 태도 등을 고려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부투자기관이나 민간기업에게 시험 과목을 특정해서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 부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소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해서라면 기업들에게 국사시험을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국사에 대해서 재미있게 느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재나 영상물을 개발하는 방안 등, 제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이 결의안은 의사일정 제1항 「국사교과의 필수과목채택 등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과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 결의안을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상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셋째 이후 자녀인 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4쪽 하단 부분을 봐 주십시오.

현행 유아교육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할 대상으로는 이 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

의 만 5세아와 이 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소득층 만 3, 4세아이며, 비용의 부담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26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한정했기 때문에 셋째 이후 자녀의 유아교육비 부담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이 조항은 저소득층 만 3, 4세아를 대상으로 신설한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셋째 이후 자녀인 만 5세 유아의 교육비 부담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 제2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라는 문구가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봉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국가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 인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특수교육 환경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이들 사회적 소외계층을 수용·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 시설 및 기관 등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이나 투자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내일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특수교육 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나아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데 이 법안의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제3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특별회계라는 회계의 구분은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코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라든지 통신사업, 조달에 관한 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와 특정 자금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재정용자특별회계 같은 경우가 있고,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처리할 필요

가 있을 때 발생하는 기타 특별회계로 일단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기타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경우 이때의 세입은 주로 특정한 세입과 일반회계의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든지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안 제3조제1호에서는 목적세가 아닌 일반 내국세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성에서 나타나는 예산회계법의 입법 취지와는 괴리된 입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은 특별회계 세입원의 적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원으로서 안 제3조제1호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작년 12월 말로 국세의 지방양여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불필요한 사문규정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3조제3호의 일시 차입금은 특별회계의 정상적 수입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출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교부금과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의 지원 대상에서 시·도교육청을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목적상 국가기관은 특수교육을 수행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국립 특수학교 등의 국가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그밖의 검토사항으로서 안 제7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안 제2조제2항”이라는 문구가…… 이 법안에는 안 제2조제2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체계상 불필요한 문구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정봉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된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특수학급의 설치와 관련하여 교육대학 등에 부설된 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재량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부설학교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전무한 실정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대학 등에 부설학교를 두는 목적이 재학생의 현장 연구라든지 실습에 있기 때문에 이들 부설학교에 특수학급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은 예비교사들이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책무를 가지고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여건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 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 특수학급의 설치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특수학급의 설치를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고, 또한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통합학급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45조제4항에서는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을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3조의2보다도 강화된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 이상 5인 이하의 학교에서는 1학급 이상을, 6인 이상인 학교에서는 2학급 이상을 설치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하여 이 개정안과 같이 특수학급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이와 함께 부설학교에서 장애를 이유로 입학할 거부하는 사례라든지 특수교육 대상자가 입학할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안 제45조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설된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을 둔다”라는 규정에는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설학교의 범주에 유치원도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57조 및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는 교육대학 등

에 설치되는 부설학교가 당연히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제45조에서 교육대학 등에 두는 부설학교로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를 살펴볼 때 특수학급의 설치는 초·중등교육법이나 유아교육법의 법체계와 함께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 6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병호 천병호 전문위원입니다.

이상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법안은 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교원에 대하여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에 미달하는 결손수업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결손수업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시간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결손수업을 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다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일면 타당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결손수업분에 대한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시간당 수업료를 정확하게 산출해 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보장조치를 취할 경우 학생 또는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결손수업에 대한 보장수업의 경우 당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자신의 학습권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학생이 아닌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또는 학사관리에 관한 법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학교 설립·경영자에게 결손수업 금지의무 및 결손수업에 관하여 교원들을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와 수업료 반환에 있어서 결손수업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학교 설립·경영자가 결손수업에 따른 수업료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는 방금 보

고드린 내용에 대한 보완적 설명 부분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학과 산업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의 임무에 산학협력을 추가하되, 특히 교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대학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대학에 학·석사 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재 고등교육법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위원회 관련 사항 등 일부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학칙에 대한 시정요구 관련 사항 등 대학에 대한 규제 사항 중 일부를 정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임무에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문제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마는, 교원의 임무에 관한 지금의 규정을 보면 현행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은 대학 등에 두는 교원의 기본적인 임무를 학생의 교육 및 지도와 학문의 연구 두 가지로 규정하되, 학문 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규정으로도 별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구태여 산학협력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4쪽에서 5쪽까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위 과정의 통합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학사학위 과정 및 석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대학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을 현재의 학사 및 석사 학위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학생의 대학원 진학 활성화와 교육 과정 다양화에 따른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석사학위 통합 과정의 도입 배경은 현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학·석사 연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대학들이 학위 과정의 통합 방식이 효율적인 학사 관리와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위 과정의 연계 방식 보다는 통합 과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대학원 활성화 및 우수 학생 유치 등을 위해서도 학위 과정의 통합 방식의 도입이 바람

직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학·석사학위 통합 과정의 신설은 대학 및 학생들에게 교육 과정 운영 및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교육 서비스의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응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 제도의 도입은 대학이 자교의 우수 학생들이 타 대학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오용할 가능성, 그리고 대학원 정원 중 일부를 학·석사 통합 과정에 미리 배정하는 것이므로 각 대학들이 타 대학에 비하여 경쟁력 있는 중점 학과에 있어서 타 대학 출신자들에 대한 문호 미개방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대학들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하에서는 학·석사학위 통합 과정의 신설과 관련된 개정조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 제29조의2제1항에서는 “대학”에 학사학위 과정 및 석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의 취지는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학에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어 당해 대학이 학사학위 과정과 석사학위 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두 학위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석사학위 통합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은 모든 대학이 아니라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학원을 둔 대학으로서 당해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현행 고등교육법 제35조는 대학과 대학원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대학은 학사학위를, 대학원은 석·박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하여 대학과 대학원이 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바, 대학이 학·석사학위 통합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대학의 학위 수여에

관한 조항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안 제31조제4항은 대학과 대학원의 수업연한을 규정함에 있어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위 “조기졸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학사학위과정과 석·박사학위과정, 그리고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 대하여 모두 조기졸업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학·석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는 조기졸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석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 신설되는 제도이고, 이미 안 제31조제2항에서는 동 과정의 수업연한 자체에 대하여 두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통산한 기간에서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조기졸업을 인정할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기졸업 제도는 특정학위과정 자체의 수업연한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학위과정이 개설·운영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그 학위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 전체에 적용되는 수업연한과는 별도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즉 우수학생들을 그 과정 내의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여 수업연한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별 학생에 관한 제도로써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여부 및 인정기준을 정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조기졸업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 고등교육법상 인정되는 다른 학위과정과 달리 학·석사통합과정에 대해서만 대학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 과정에 참여한 학생 중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수업연한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법률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대학원위원회 내용을 고등교육법에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학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동 조항은 고등교육법 제29조제3항을 그 법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대학원위원회는 학위수여, 교육과정, 정원 등 대학원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고등교육법 자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즉 고등교육법 제29조제3항은 중요기구의 의무적 설치를 위한 위임의 법적 근거로 명료하지 못하다는 것이 사계에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법체계상의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고등교육법에서 직접 정하기 위해서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상 명확하지 못한 위임관계의 문제점은 비록 해소된다고 할지라도 대학원위원회라는 특정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법령이 강제하는 것이 법률적·정책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현재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고, 고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조직”에 관하여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 대학의 조직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아니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을 통하여 각종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 등 필요한 조직을 자율적으로 마련·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학원위원회라는 특정기구에 대해서만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그 기능,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상황인바, 이러한 예외적 규정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일반적인 법 정신에도 불구하고 법률로서 보호하여야 하는 특별한 목적이 인정될 때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학에 설치하는 대학원위원회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학원을 대학에 두도록 되어 있어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전체 차원에서 볼 때 대학원에 대학과 분리된 자율적인 조직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 본 학·석사학위통합과정과 같이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

리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일부 대학의 경우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대학원의 비중이 증대되는 등 각 대학 및 대학원의 여건 또한 학문의 분야에 따라 대학과 대학원의 관계는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법령이 특정한 기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법률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대학과 대학원 관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대학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4조 역시 위와 같은 방향에서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의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 수단으로 휴대전화가 이용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무선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대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의 소통방해 및 전파법 상 무선국 운용 차단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서와 같이 전파를 차단하는 경우 기술적인 측면과 함께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현재 전파차단기 등을 이용하여 전파를 차단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정확히 한정된 공간만을 차단하여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만큼 기술적인 기반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황인바 이로 인하여 시험장 주변의 전파차단이 일반인의 통신을 방해하는 경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시험장에 전파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 현재 전국에 걸쳐 연 1회 실시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총 시험장이 2만 5000개라 할 때 100억 원의 예산이 소요

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투입되는 예산 대비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매년 그에 대응하는 전과차단장치 교체비용은 보다 훨씬 막대한 규모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정안은 이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과법의 관련조항의 개정을 전제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양법안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처리 상황을 지켜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법안은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그 시험이 무효로 된 자가 다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소정의 인성교육 및 사회봉사를 이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개선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5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조직적인 대규모 부정행위가 사회문제화된 바 있었고, 결국 전국에서 총 329명의 응시자가 그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었습니다.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동 시험의 신뢰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일응 타당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정의 인성교육과 사회봉사를 이수한 후 다음 연도 시험부터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형사벌과의 병과 등의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인성교육의 담당기관과 사회봉사의 대상기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사벌로써의 사회봉사와의 병과여부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당해 시험의 무효 외에 형법 제137조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통하여 형이 확정되는 경우 그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지게 되기는 하겠으나 곧바로 형의 집행을 실행하기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

를 명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이 무효로 된 자가 다음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정의 인성교육과 사회봉사를 이수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경우, 형법에 의한 사회봉사 명령과 동 법안에 의한 사회봉사가 병과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병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법 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은 형법상 형의 종류에 하나에 속하지는 아니하나 형의 집행을 유예함에 있어서 또는 소년범 등에 대한 재범 방지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바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사회봉사 명령과 이 법에 의한 사회봉사를 병과하도록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이중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험 부정으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인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회봉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밖의 검토사항입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음 연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대부분의 자격시험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건축사법, 공연법, 수의사법, 약사법, 의료법 등에서는 응시자가 성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2~3년의 응시제한 기간을 두고 있는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경미한 부정행위가 아닌 형사벌이 선고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응시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 문제, 대학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표절 등 비윤리적인 문제 등을 근절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학습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학생에 대하여는 학습자로서의 윤리를 준수하도록 하며, 교원에 대하여는 학습윤리를 지도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에 관한 국민에 관한 권리·의무,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법안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생 및 교원의 윤리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법안은 대학경쟁력의 강화를 통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되, 그 재원으로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7.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등교육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하에서 초·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교부금의 형식으로 국가가 교부하는 것과 유사하게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도 국가가 매년 일정액을 안정적으로 확보·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법안의 주된 문제는 예산의 확보와 관련이 있는바 현재의 재정 여건 및 규모에서 추가적인 교부금의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의 편성·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법안은 초·중등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금 개념 및 운영방식을 차용하고 있으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교부금 제도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 법안은 제정법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공청회에서 논의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금 제도 도입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7.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7.6은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약 7조 16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바 이와 같이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7.6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국가의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이 1%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2004년도 GDP 대비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7조 589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바 목적세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을 제외하는 경우 GDP 대비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략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7.6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7.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동 법안의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 법안의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황우여 위원장, 지병문 간사와 사회교대)

첫째,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대학의 책임성과 자율성에 배치됨. 즉, 대학은 설립주체가 자기 책임하에 설립·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바 국민의 세금으로 대학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국세 총액의 7.6%는 2004년의 경우 7조 1600억 원에 달하고 있는바 현재의 재정여건상 그 실현이 불가능함. 즉, 향후 25년간 매년 2조 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의무비율 확보는 지나치게 재정부담을 가중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교부금은 국가와 지방 간 또는 지방 상호 간 재원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환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교부금 제도의 도입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동 사안은 고등교육기관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서 내국세 총액의 일정률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인 교부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도입하는 경우 그

교부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계부처와의 충분히 협의 및 여론수렴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부금의 용도 및 교부방법에 관한 점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이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교부금을 고등교육기관에 교부할 때에는 대학평가결과, 대학의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역균형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하되 교부금의 교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제도로써 교부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용도에, 어떠한 기준을 통하여 재원을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바 동 개정안에서 밝히고 있는 교부금의 사용용도 및 교부기준은 현재 정부의 고등교육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교부금을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1조의 경우는 “운영”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일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사업비가 아닌 고등교육기관의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문리 해석에는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공·사립대학에 대해서도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면서 동 재원을 일반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따라 안 제1조의 목적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교부금의 구체적 교부기준 등을 시행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별 교부방식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살펴보면, 대학특성화 사업, BK21 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산학 협력 중심대학 사업 등 국가가 정책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각 대학들이 경쟁을 기반으로 참여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학교에 한하

여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어 대학의 특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선택과 집중”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4조에서는 대학평가결과, 구조조정,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역균형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고등교육기관에 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별로 국가예산을 배정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고등교육기관에 교부금을 교부하고, 당해 예산의 용도는 운영비 등 당해 고등교육기관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개별 고등교육기관은 그 규모나 학생 충원 정도, 교육목적 등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방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평가방식이 아닌 대학 전체에 대한 평가방식이 도입되는 경우 일부 항목에 경쟁력이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선정되기보다는 다방면에 걸쳐 적절한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선정은 결국 대학 특성화, 대학 구조조정 및 통폐합의 정책방향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동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부금의 교부방식은 지금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방식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이러한 지원방식의 변경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새로운 지원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이를 위한 세부 방법 및 기준의 골격이 동 법안에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동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부금의 교부방식을 고등교육기관별 교부가 아니라 현재와 같은 사업별 교부방식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여전히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00년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 약 8조이고, 정부가 당해연도 고등교육중점사업을 구조조정사업과 산학협력사업으로 결정하여 국립대학 인건비와 운영비에 일정액을,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일정액을 배분하여 동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경우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조조정사업은 필요하나 산학협력사업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더라도 8조의 교부금에 기속됨으로 인하여 산학협력사업 대신 다른 사업을 모색하여 8조의 규모에 맞추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을 위하여 보다 큰 규모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등 법안은 그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집행방식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지병문 천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의거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되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형편이 있어서 먼저 질의하도록 양해를 얻었습니다.

먼저 부총리께 좀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취지만 간단히 질의하면 국사의 비중을 강화하고 고등학교에서 필수과목화하는 김영숙 의원님하고 박성범 의원님의…… 국사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도 가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희도 국사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국사교과서에 근현대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우선 부교재를 만들어서 학습자료를 공급하고 근현대사를 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재량학습시간을 통해서 교육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역사를 사회과목에서 분리하는 문제는 교과과정 편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다음에 정봉주 의원님이 낸 법안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이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재원 마련 방법에 있어서 특별회계로 하려면 전입금이나 특정 세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하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안에 보면 2010년까지 2조 9700억, 약 3조에 가까운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 보시기에 특별회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혹시 없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세입원을 일반 내국세의 몇 %로 하는 것으로 해서는 특별회계를 만들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예산을 톱다운 방식으로 하면 결국 교육 예산 전체 중에서 이 부분에 얼마나 할당·할애하느냐 쪽으로 결론이 나 버리기 때문에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조치를 우리 교육부 전체 예산 속에서, 특히 교부금 예산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배정하느냐 하는 문제로 결국 귀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군현 위원 이상락 의원이 낸 고등교육법 개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이수시간에 미달하는 수업에 대해서 보강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 수업결손분에 대해서 수업료를 반환하라고 하는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제 생각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면, 첫째는 반환 주체의 책임소재가 우선 제가 볼 때는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어제도 지적했지만 사학분규로 학내 소요가 발생해서 수업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교수의 잘못에 의해서 수업을 못 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고 또 자칫 이런 조치가 학교 내 혼란을 더욱더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수업료 산출 기준이 애매하다고 봅니다. 수업료라고 하는 것이 꼭 강의받는 그것만, 수업을 교실에 들어가서 받는 것만 수업료 또는 등록금의 개념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을 갖고 있어서 학생 지도라든지 학생생활 전반, 학교에 입학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일어나는 명시적인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소위 우리가 교육학에서 말하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받게 되는 교육도 수업료라고 하는 개념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시수가 다르다고 해서 등록금에 차이를 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업 결손에 대한 교수의 책무를 강화하고, 또 재단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수업 결손의 문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으로 그쳐야지 수업 결손이 생겼다고 해서 수업료를 반환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도 이군현 위원님과 전체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러한 입법이 교수사회의 집단 반발이나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크고, 대부분은 학칙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군현 위원 그다음에 이주호 의원님께서 내신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를 해서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 자가 다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인성교육 및 사회봉사를 이수케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이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는데 또 봉사기간을 다시 받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디까지나 학생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부정행위를 막는 데 어떻게 더 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쪽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법원에서 지금 이러한 수능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의 한 방법으로 사회봉사활동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고, 교육적 견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률로 정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너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적인 의무 부과 경우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군현 위원 또 이주호 의원이 낸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교원이나 학생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그 개념이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이주호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에 보면 학습윤리에 대한 개념이 제가 보기에 명확하지 않은

듯 해 보입니다.

현행법상 교원의 권리·의무조항은 윤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학습윤리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타 법률과의 중복성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학습윤리가 매우 광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칫 교사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을까,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사의 세세한 직무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자체 윤리 기준을 만들어서 실제로 실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저의 생각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현재 교육기본법상 교원의 책무성에 관한 종합적인 해석으로 이주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목적을 달성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들은 전부 교육과정에서 개별 과목, 바른생활, 도덕, 윤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개별 교육과정에서 정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군현 위원 끝으로 박찬석 의원이 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중·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초·중·고의 예산을 매년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도, 저도 대학에 십수 년 있었던 사람으로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중요하다, 이취지는 절대적으로 동감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답을 해 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초·중·고는 의무교육, 보통교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대학은 수혜자가 대학을 가는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사실상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를 보통교육으로 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사람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으로, 가지 않는 사람까지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인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대학에 충당하는 것이 모든 대학 가는 사람한테 대학을

보내는 사람이나 안 보내는 사람이나 의무교육이 아닌데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것 하고요.

둘째는 사용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교부금 형태로 운용될 경우에 대학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중·고는 의무교육이니까 상관 없지만 자칫 경쟁력 없는 대학에 국민의 혈세를 쏟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스스로 자구노력하지 않는 대학들도 그저 그냥 앉아서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된 대학 재정교부금에 의해 혜택을 받음으로 해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교육부 입장을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고등교육의 재정에서의 지원이 OECD국가에 비해서 우리는 사립대학이 많은 특성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것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충원해야 할 필요성은 느낍니다라는 반드시 이 방법으로 내국세의 7.6%를,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외에 또 추가로 별도의 교부금법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좀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이군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대학의 경영이나 교과 교육내용의 평가에 따라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또 특성화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봐 가면서 그런 경우에 기여하는, 그런 구조조정을 이루어 가는 대학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지병문 이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열린우리당의 조배숙 위원입니다. 먼저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유아교육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유아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의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해서 출산장려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저는 이것이 과연 근

본적인 해결책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율 저하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고 현실적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에게 양육비 부담이 출산 기피의 커다란 원인이 되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셋째를 출산했을 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요. 좀더 효과적인 방법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유아교육비 지원을 늘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중개정법률안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는 조배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 전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를 위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정부 내의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양육비와 교육비를 사회화해야 하는데 재정 형편상 저소득층들의 양육비·교육비 지원에 우선적인 중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정부에서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두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요. 대학의 학사·석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하고 제도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학의 원래 근본적인, 핵심적인 임무는 학생교육, 지도 그리고 연구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학교원의 본래 임무를 배제하고 산학협력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아니냐, 물론 사회적으로 대학의 역할이 변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을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가, 대학이 지향해야 될 사회적 가치에 과연 부합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산학협력 전담 교원에 관해서 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대학 자율에 맡겨두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학사·석사학위 통합 과정 신설 문제인데요. 이것은 학위 과정 소요 기간을 단축시

켜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수요를 조기에 충족시키는, 필요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이 대학들의 안정적인 대학원생 모집 그리고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이미 일부 대학에서 통합과정 설치를 홍보하면서 자기 학교 우수 학생들이 다른 데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대학원생을 안정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고 내심으로는 기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각 대학들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학과에 대해서는 다른 대학 출신자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더 큰 문제는 결국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교육의 질이 담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모든 대학에 통합 과정 설치를 허용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배출된 학생의 실력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제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실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먼저 산학협력 전담교원 제도는 원칙적으로 교육과 학문 연구를 대학교수의 기본적 임무로 하는데 다만 이공계 교원들과 같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산학협력을 부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한 것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공계대학교에, 예를 들어 한국 산업기술대학 같은 데 가보면 실험실이 바로 강의실이고, 거의 구분이 안 되고 그리고 실험실에서 현장 기업의 부장들, 차장들하고 대학생들이 함께 실험하면서 공부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목·과별로 전부 오거나이즈(organize)해 주고 연결해 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 중에 우수한 사람을 확보하려면 교수의 자격을 인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석·학사 통합과정은 다양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지금 조배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점들은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특히 타 대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그런 점은 특별히 유념해서 운영해 가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내실화되어야 된다, 실력이 거기에 상응하도록 이게 담보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특별회계의 경우에 세입은 특정한 세입, 그리고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법안에서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어떤 목적세 등의 특별한 세입이 아닌 일반 내국세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하고 있거든요.

특별회계를 두는 것은 원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해서 일반회계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것이 특별회계를 두는 예산회계법 입법 취지와 좀 맞지 않다는 측면이 있고요. 아무튼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특수교육 수혜율을 2004년 58.1%에서 2009년 100%로 확대하겠다 이런 목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도 기획예산처에서 특수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두 가지 의문점이 들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우선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은 실제로는 실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국회에서 마지막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조정하니까 결국 정부에서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늘리다 보면, 그러면 교육부 전체 예산에서 충당해라 해 가지고 교육부의 다른 예산을 줄여서 그것을 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속에서 시급한 특수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실제로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방법으로 풀어야 하고 시·도 교육청들에 이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또……

○조배숙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답변

을 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논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논회 위원** 연일 애쓰고 계십니다.

안상수 의원님이 유아교육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셨는데 셋째 이후 자녀 유아 교육 비용의 전부 또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이 주된 것 같은데요. 법안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유아교육비 때문에 출산을 더 하고 덜 하는 것은 사실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유·초·고등학교 등 경쟁 과열로 인한 비용, 교육비 증가라든지 고용시장 불안정이라든지 가족 관계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사회 전반적인 가치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저출산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셋째 자녀 유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목적 달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좀 의문시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아까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든지 또 유아교육에 관한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더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상락 의원님께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밖에 나가느라 못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수업 결손의 구체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아까 이군현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재단 측에 있는 것이냐, 학교 측에 있는 것이냐, 교수 측에 있는 것이냐, 학생 측에 있는 것이냐, 이것을 갖고 학교 내에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이런 정도의 일들은 학칙으로 해결할 일이지 법률로 정해서 등록금을 반환한다든가 해 봐야 실효성 있게 집행은 안 되면서 분쟁만 야기할 가

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논회 위원** 예, 저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대학 교육의 질을 수업시수를 채웠느냐, 못 채웠느냐 이런 수량적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법안인 것 같다 싶어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규택 의원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관해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진과방해를 요청하자라는 것에 대해 아마 정부도 검토를 해 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린 상대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실효성은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완전하게 막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정통부에 진과차단기를 강력하게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은 있는데 현행 법률상 금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금지되어 있는 이유가 정보화 시대에 정보라는 것은 소통이 생명인데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를 자꾸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느냐, 학교 교실만 하다 보면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절은 어떻게 하느냐, 조용함을 요구하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확산되면 정보화의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는 정통부의 반론을 저희가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고요. 부정은 감독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대책에 포함을 못시키고 계속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구논회 위원** 어쨌든 불가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정몽준 위원** 그것은 정통부의 너무 강변인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휴대폰의 주파수를 막기 위해서 한 40만 원 들여서 기계를 설치하면 막아지는데 학교가 동네에 있는 경우에는 이웃 가게나 집들까지도 전부 휴대폰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부정을 획책하는 사람은, 또 다른 기계를 개발하면 그 주파수를 넘어서서는 통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형태의 기계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구논회 위원** 정 위원님, 제가 계속해도 되겠

습니까?

(웃음)

어쨌든 불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사실은 부정행위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방법으로 국한된 것만은 아니거든요. 다른 방법들도 있고 또 수능만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소위 내신이 강조되다 보니까 내신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상시적으로 학교에다 전파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은 잘 된 것 같고 차라리 수능이나 내신 부정행위에 대한 불이익이나 처벌 기준 같은 것을 강화함으로써 방지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 법안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수험장에서 일체의 휴대품을, 감독 교사가 휴대형 검색기를 가지고 있게 해서 화장실 가거나 할 때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험장에 들어오면 일단 모든 소지품을 다 앞에 내놓고 특히 휴대폰은 주머니 속에 넣고 있으면 부정행위를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관리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논회 위원 그 부분은 수능시험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 내신 부정이 심각해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주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중에서 역시 부정행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대학입학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서 그 시험이 무효된 자가 다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소정의 인성교육 및 사회 봉사를 이수하도록 한다는 규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건물생심이라고 옆에 답이 보이는데 사람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우발적인 행위도 사실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걸릴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과도한 제약이나 이런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좀 비교육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우 당해 시험 무효조치 같은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고……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이중삼중의 조항들을 자꾸 신설해 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말

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구논회 위원 이것은 좀 다른 내용이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도 구논회 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단순한 부정사건에 대해서 응시자격 제한 같은 것도…… 지금 단순한 부정행위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고 휴대폰 부정처럼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는 부정에 대해서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으로 경중을 가려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논회 위원 애쓰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병문 구논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희 위원 진수희입니다.

국사교과의 필수과목채택 등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 관련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안했는데 7차 교육과정 틀내에서라도 융통성 있게 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유아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해서인데 여성위원회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에도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안이 제출되어서 여성위원회에서는 이미 법안심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은 이것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 대부분의 여성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고 지금 아이를 하나도 낳지 않으려는 마당에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한 지원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구논회 위원님이 좋은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들에 의한 출산 과업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나 가사 부담이 온통 여성한테 몰려 있는 불평등한 가족문화라든지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직장문화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고는 이런 저런 정책수단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따라서 근본적인 의식 개혁이나 문화운동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식 개혁에만 의존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정책수단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그 획기적인 것을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부총리께 유아교육 재정 관련해서 제안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진수희 위원 그런데 답변은 못 들었거든요.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의식 개혁이나 하나의 문화운동으로도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만 논의 과정 중에 나왔던 한 가지를 소개드리면 이미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인 1.19명 수준에서는 셋째를 지원한다는 것 가지고는 전혀 대책이 될 수 없고 최소한도 둘째부터는 지원해 주어야 그나마 출산장려책으로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전문가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재원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 재원은 주로 육아비용과 교육비용을 사회화하는 데에……

우리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개인 부담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회화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야 하고 이것은 사회 전체가 장기간에 걸쳐서 부담하고 그 효과도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특단의 재원 발굴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어제 제안한 것은 기억하시지요?

우선 상징적으로라도 장관 특별교부금을 전액 유아교육에 투입하겠다고 하시면 정부 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주는 이펙트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교육부의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 이런 것도 단숨에 만회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봐서 올해 쓰고 남은 특별교부금 예산을 전액 투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어제 질의를 드렸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특별교부금이 가지고 있는 예비비적 성격, 어떤 재난이 생긴다든가 그럴 때 써야 하는 성격하고 다음에 매년 특별교부금으로 사실상 처리해 오고 부담해 온 비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유아교육비로 할당되는 부분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냥 단순하게 검토해 보지 마시고요.

그런데 사실 장관 특교, 그것 그동안 과거에 쓰여진 것을 보면 예비비의 성격이나 무슨 재난을 커버한다는 성격보다는 그냥 이런 저런 지역에 조금씩 나누어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의미 있는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봉주 의원님의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관련해서 입법취지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결국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지금 이 법안대로 한다면 특수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소요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야만 이것이 법안대로 갈 수 있는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1만분의 45로 세입을 잡으셨으니까 금액이 2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진수희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정봉주 의원님 안은 내국세의 1만분의 45를 의무배정해 가지고 쓰자는 것이니까……

○진수희 위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고 및 지방비에서 8005억인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것은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진수희 위원 그러면 정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과 일정 부분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정봉주 의원 이것을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늘려서 최종적으로 2조 5000억을 확보하자는 것이지 내년부터 일시적으로 확보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8000억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예산 확보가 2005년 현재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것은 이따가 말씀하시고요, 저

는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다면 입법취지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춘진 의원님 법안과 관련해서는 교육소비자, 즉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것이 악용될 소지도 있고 또 수업료 반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휴강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사실 교수의 양식이나 학교 차원의 자율적인 조치에 맡겨야지 이것을 법안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호 의원님의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의 학습 윤리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윤리규범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요즘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경우는 개정안처럼 교육당사자의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이렇게 하면 그냥 선언적인 조항에 그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을 같이 마련하면서 입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찬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인데 저는 현 시점에서 무조건적으로 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 중인 대학구조 조정작업 또 누리사업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추진한 후에 이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대학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부실 대학들이 계속 연명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학구조 개혁작업하고 매치가 되는지, 오히려 저해하고 늦추는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겠는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대학구조 개혁작업은 금년에 800억의 예산을 지난해에 편성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특성화된 영역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구조개혁을 하는 대학을 신청받아서 평가를 해 가지고 재정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 갈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9.4%

나 쓰고 있는데 또 다른 고등교육교부금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전체적인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교육 전체에 미치는 시급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존의 재정지원사업 또 정부의 각종 R&D사업과 같은 것들에서 우선적으로 대학의 연구 역량을 늘리는 쪽의 지원이 확대되도록 부처 간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아교육 재정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병문 진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주 위원 지금 나누어드린 이 ‘조선통신사’ 일·한 공통 역사교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과 우호의 조선통신사’ 이것이 방금 2시에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 3시에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부총리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정봉주 위원 2001년 8월에 일본 역사교과서에 문제가 있어서…… 매년 4년마다 개정이 되는데 그때 문제가 생겨서 대구에 있는 교사들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히로시마 현 교사들과 의정서를 체결해서 공통교과서를 작성하자 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하고 저녁에는 연구하면서 4년에 걸쳐서 만든 역작입니다.

이 모델이 된 것은 1976년도 독일과 폴란드가 공동교과서위원회를 만들어서 독일 연방공화국과 폴란드 인민공화국의 ‘역사와 지리교과서에 관한 권고’라는 내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동북공정으로 고구려연구재단에 갔을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꾸 국가 차원의 대립이 되니까 즉각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교사들이나 학자들에게 한·중·일 공동교과서위원회를 만들어서 권고안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4년 동안 온갖 에피소드가 다 있습니다. 교사 분들이 양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래도 자국 위주의 역사관을 기술하려는 노력을 하

다 보니까 대립도 있고 충돌도 있고 또 제일 고통스러운 부분은 수업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곧 재정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당장 재정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조선통신사는 양국의 입장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기술한 교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의 학교와 도서관에 비치할 하고 학교 현장에서 부교재로 채택하도록 교육부가 권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한·중·일 3국의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공동 역사부교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세 나라에서 각각 자국어로 5월 중에 발행이 됩니다. 그 교과서를 일본에 많이 보급하고 일본의 각급 학교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모금캠페인 같은 것을……

○정봉주 위원 모금캠페인은 시민운동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방송국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째는 해당 시·도 교육청에 이것을 권고해서 일괄 구입해서 뿌려주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이 나서 7000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시·도 교육청에 즉각적으로 예산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시·도 교육청에 권고해서는 이 교재를 못 사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일정 정도 예산 책정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것은 부교재입니다. 이 교재의 가치가 어디에서 돋보이느냐 하면 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었습니다. 사실에 기초하고 현장에서 부교재로 채택될 수 있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부교재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 교사들이 상당히 우익단체들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본인들이 밝힙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의 부끄러운, 만행에 가까운 역사 왜곡을……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것도 일정하게 양국 교사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촉구하라고 정부 차원에서 입

장을 밝혀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알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리고 오늘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제가 발의한 것이지요.

지금 현재 종합계획이 3년부터 7년까지 아닌가요, 그렇지요?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 정석구 예, 그렇습니다.

○정봉주 위원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인데, 추진하기 위해서 연간 80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2005년도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8000억 확보되어 있는가요? 그렇지 않지요?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 정석구 연간 8000억이 아니고요. 작년에 수정계획을 마련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까지 합해서 8000억이라고 한 것이거든요.

○정봉주 위원 추가 예산이네요.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 정석구 종전에 5년 계획에 들어갔던 예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까지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봉주 위원 그런데 2007년까지 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예산 확보가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특별회계법안을 낸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교육 재정이 늘 부족하다라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교육 재정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에 일정 정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소위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검토보고를 충분히 듣고 일정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이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대책 소위원회에서 넣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확보하지 않으면 이 재정은 영원히 확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법안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중국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넣어서 내국세의 몇 %로 규정을 하는 법안으

로 확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너무 경직되게 칸막이를 자꾸 만들어 주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것만 해도 초·중등교육 외에는 못 쓰도록 묶어 놓았는데 거기에서 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서 얼마를 묶고, 이렇게 자꾸 묶어 나가는 것은…… 그러면 다른 용도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 폭력이다, 다른 용도에서 또 묶기 시작하면……

○정봉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재정 운용을 경직화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책 예산안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경직적으로 규정을 정해 놓아야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이기에 때문에 항구적인 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풀어 놓게 되면, 이렇게 규정해 놓지 않게 되면 특수교육 예산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시적으로 여기에서 묶어서 특수교육 예산을 확보하자고 하는 취지지 예산의 경직성을 더 경화시키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특수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한 안이 있으면 이런 법안을 발의하지 않지요. 특수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한 방안이 교육부에 있으신지 그것을 좀 밝혀 주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희가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서 아까 실무진에서 보고드렸던 2007년까지의 계획을 포함해서 중기계획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1조 2700억을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서 특별히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금년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하나까 지방교육양여금이 걷히지 않아서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재원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실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특수교육에 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계획대로 반영하도록 시·도에 지침을 다시 한번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내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참여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처음에 발표는 요란하고 화려했는데 실질적으로 무척 부족합니다.

특히 특수교육에 대해서 통계를 보게 되면 유치원에서 특수학교에 취학한 학생이 1400명…… 초등학교는 2만 명이거든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별안간 1만 8000명의 장애학생이 나타난 게 아니고, 유치원에서는 보낼 학교가 없어요, 특수학교가.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육정책에 있어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부분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대학교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라고 아까 검토 의견을 냈지만 이것을 한시적으로, 예산을 부분적으로 경직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특수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강제적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도 발표하고 했으니 필요한 예산 확보에,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총리님께서 제일의 우선 정책으로 특수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 정책을 추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BTL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수교육 학교 15개를 우선 착수하도록 포함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지병문 정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호 위원 먼저, 존경하는 이규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전파 차단기 설치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파 차단기의 통신방해 범위가 직경 10m에서 100m 정도로 자칫하면 인근지역까지 차단되어서 일반인들에게까지 과잉 차단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 혹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바로 그

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수능부정행위방지 종합대책에 전과 차단기는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주호 위원 사실 전과 차단기에 예산 소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대당 60만 원씩이기 때문에 예산도 한 176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한 100억, 한 40만 원 정도……

○이주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제가 발의한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의 당위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의 전과 차단기 얘기도 결국 작년의 수능 부정 때문에 촉발되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내신 부정이라든가 각종 학교의 비리 문제가 사회 이슈화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전과 차단기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결되기는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범죄와는 다르게 학생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런 비리들은 결국 교육적인 해법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렇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래서 교육기본법에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담자 하는 것이 법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학습 윤리를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가르치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진국에서는 소위 어너 코드(honor code)라고 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런 윤리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하는 자세를 어떻게 배워 나가는가 하는 것이 최근 평생교육이 중요하게 되면서 더더욱 더 중요해지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교육부에서 사실 이런 캠페인을 계속 좀 하셔야 됩니다. 벌써 조금 잊혀져 가고 있는데, 특히 정책 사이트에서는.

그래서 이런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시려면 기본법에 아예 못을 박고 이런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서 각급 학교가 소위 어너 코드를—윤리 강령이지요—제정하는 운동을 벌이시는 게……

앞으로 더욱더 걱정되는 것은 지금 고1 학생들이 2008학년도 입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중간고사부터 상당히 프레스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

니까? 자칫하면 또 학교 시험 부정의 회오리가 다시 몰아닥칠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수능 부정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교육부가 계속 국가적인 캠페인을 벌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반대할 분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교육부가 주도해서, 또 교육청이 협조하는 형태로 학습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좀 벌일 의향이 없으신지를 한번 여쭙어 보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난번에 수능 부정, 학교 성적 부정행위 등에 관해서 교원단체들과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학교 구성원들 중에서 특히 선생님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여기에 임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자정운동, 윤리 강령 제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펼치는데, 선생님들만으로 될 일은 아니니까 학부모들과 선생님들과 지역사회의 여론 주도층들과 함께 하나의 캠페인으로 벌이는 것을, 다행히 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요.

수능 부정 방지대책의 하나로 사실 작년에 정부 대책으로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수능 부정자에 대해서 2, 3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의견을 제기했을 때는 너무 과하다, 물론 학생들이 이런 부정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벌하는 제도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 이들이 학생들이고, 또 수능이라는 것이 정말 일생일대를 좌우하는 아주 중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만큼 프레스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에서는 응시자격을 2, 3년 박탈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인성 교육이나 사회봉사를 요구하도록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도 수능 부정행위자와 같은 경우 법원에서 처벌을 할 때 사회봉사 활동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법률로 정할 경우에 중복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도교육감이 교육적 견지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싶고, 그리고 법에서

응시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부정의 유형에 따라서 단순 부정행위와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부정행위로 갈라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호 위원 장관님의 의견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 학생들의 응시자격, 특히 수능의 경우에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형에 따라서 2년, 3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형법상에 물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중복이 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충분히, 또 교육법에 담아서 학생들을 징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법상의 징계와 교육법에 담아서 하는 징계 조치는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이주호 위원 다음으로 정부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산학협력 전담 교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산학협력의 중요성은 사실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과연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학협력 전담 교원을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가 있습니다.

왜 지금 굳이 전담 교원을 두어야 되는지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이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전담 교원을 둘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인데요.

제가 한국산업기술대학을 얼마 전에 가 봤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의 강의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험실이나 제작실이 바로 강의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업 현장의 국·과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학생들이 같이 실험을 하면서, 교수도 함께 참여해서 실험을 하면서 거기에서 가르치고 하는데요. 대개 이런 작업 단위가 5명에서 많아도 10명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는데, 한 수백 개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전담해서 오거나이즈하고 네트워킹하는 교수가 필요한데, 그 교수를 내용을 잘 아는 자격 있는 사람으로, 특히 현장 경험을 충분히 쌓은 사람 중에서 모셔 오려고 하는데, 현재 대학 입장에서

그 사람을 우대할 수 있는 조건이…… 교수 자격을 부여하면서 데려와야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러한 필요가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이주호 위원 취지를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사실 겸임교수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연구를 하면서 그 연구 결과가 산학협력으로 이어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를 전담하는 교수도 충분히 산학협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산학협력만 전담하는 교수가 왜 필요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깐 어떻게 보면 산학협력 행정을 책임지고 하실 분들을 교수로 모시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그렇습니다.

○이주호 위원 사실 그런 취지라면 고위 행정직을 우대할 수 있는 법체계가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굳이 교수의 신분을 드리면서 행정직을 유치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법안도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대로 굳이 교수를 모셔 와야 되는지, 그것은 정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병문 이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영 위원 저는 가급적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했던 이야기가 다시 또 불거져 나오는 것 같아서 질의를 다시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 교육 재정과 관련해서 내국세 몇%, 이런 것이 법률로 제한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들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19.32%, 오늘 정봉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중에서 특수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0.45%, 그리고 또 박찬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중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7.6%, 이런 게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재정이 투입됐던 것을 상시화하는 과정에서, 또 특별예산으로 편성됐던 것들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다 확고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런 제안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가령 저도 교육복지기본법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할 때 교육 재정과 관련해서 이런 방안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다가 그것을 중단했는데, 중단한 이유가 이렇게 몇 %, 몇 %를 우리가 법률로 명시해서 법률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결국 정부 재정 편성,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적 요건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예산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20% 좀 넘게 책정된다고 할 때, 나머지를 다 모았을 때 그것을 넘어버리면 사실 소용이 없는, 법의 실효성 이런 문제들이 자꾸 제기가 되고……

그래서 저는 교육복지기본법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중단하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세가지의 법 속에서 내국세 몇 % 이런 제안들이 나왔는데 이것을 그냥 이런 상태로 놔두어 가지고 과연 해결이 가능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위원회 내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런 것을 조정해 봐야 정부로 돌아가서 전체적인 예산 배분과 기획예산처나 재정경제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다시 교육위원회에 돌아와서 또 재조정하거나 이런 과정이 불가피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 가지고 이런 문제들, 이외에 다른 문제들도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육부에서 교육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어떤 윤곽들을 정부부처 내에서 협의해 가지고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법으로 발의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 실효성이 없거나 혹은 법을 통과시킨다 해도 굉장히 무책임하게 사후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도 이인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매년 경상적인 예산의 총 규모는 재원 조달

의 한계 때문에, 국가 전체로 쓸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 지금도 단일 비목으로 교육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28조인데 2위인 국방비가 20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 경상적인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28조를 기초로 하고 그것보다 어느 정도 늘어나게끔 하는 노력은 교육부가 정부 안에서 주장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육 분야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 그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러니까 복지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초·중등이라든가,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선순위를 조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BTL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시설비 예산은 절감할 수 있어서……

○이인영 위원 부총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의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답하신 거나 어제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답한 그 내용이 아니라 법 조문에 이렇게 몇 %라고 명시되어서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었다고 할 때 그것을 지킬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들을 계속 다 방치했다가는.

그러면 법을 지키지 못하는 예산편성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이런 교부금 형태로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단기간으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이게 한시적인 게 아니라 상당 기간을 지속시키는, 법률 이런 데서 몇 %가 지정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법은 꼭 필요한 법은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정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의원들이 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꼭 지정하셔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이런 요인들이 있으니까 가급적 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계시다가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마다 몇 % 몇 % 다 지정해 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도 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2006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 소위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함께 다루어질 문제인데 그것 외에 다른 교부금법을 또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봐야 실효가 없습니다.

물론 고등교육교부금법 같은 것은 통과만 될 수 있다면 실효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확실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서 오히려 대학의 구조조정이 잘못 가는 쪽으로 유도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다른 교부금법을 추가로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의 예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몇 % 올렸을 때 마지막에 재원이 없으니까 결국 그 재원만큼 교육부 전체 예산을 깎아서 충당을 했고, 결국 그런 것을 늘림으로써 고등교육 재정으로 돌아갈 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자체가 주어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이 어려워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몇 %라고 지정해서 생기는 경직성, 이런 것들이 가지는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측면 아니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예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경직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다, 그게 합리적으로 제대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논리적 기초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건데요.

적어도 저는 4월 말 거쳐서 6월 중에 초안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라도 어떤 것은 그렇게 지정하고 어떤 것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의 가이

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요.

저는 하여간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문제와 관련해서요, 저출산 문제로 자꾸 유아교육의 문제들이 다루어지는데 저출산의 몇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가급적 사회 속에서 제거해 나가고 사회적 여건을 개선시켜서 출산을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측면만이 아니고 유아교육이나 육아·탁아의 문제들을 공적 영역으로 확보하고 진입시켜오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필요한 문제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이 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요, 이 법이나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만 지금 셋째 자녀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출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다.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출산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저출산의 요인을 분석하니까 아이들 낳아서 기르고 키우고 교육시키고 이런 게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의 사회적인 부조를 확대해 가지고 공적 영역이 감당하는, 저출산의 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문제 말고도 기본적으로 육아나 교육의 문제들이, 사적 영역에 방치됐던 부분들을 공적 영역으로 우리가 확보해 내고 그런 측면에서 확대해 나가는 것들은 순방향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셋째 자녀 건 다섯째 자녀 건……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저희 정부에서는 재정의 한계 속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5세아는 의무교육으로 다 지원을 하고, 3, 4세아는 저소득층 자녀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은 셋째 아이들은 무조건 다 지원해 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의 목적이 저출산 극복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도움은 되겠습니다. 방법은 현재 재정지원 방법의 우선순위, 저소득층 3, 4세아 자녀부터, 그것도 완전히 다 못하고 있거든요. 3, 4세아의 지원 폭을 더 확대하고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인영 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잘사는 집 아이들이건 못사는 집 아이들이건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등학교 영역으로까지 의무교육을 확

대해 나간다, 모든 교육을 공적인 영역에서 감당해 나간다고 할 때 그 순서가, 예를 들어서 못사는 집의 아이들부터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유아교육의 문제들도, 육아나 탁아의 문제들도 그런 측면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정책 차원에서.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복지의 문제들이 과거에는 절대 다수의 빈곤층이나 소외층을 중심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외층, 빈곤층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소수라고 할 때 다수의 복지 문제로 적극적으로 확대돼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육아나, 아니면 유아교육의 문제들은 공적인 영역으로 당연히 확장돼 나가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꼭 저출산의 요인들과 연결시키지 않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순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논리적 기초를, 그 주장의 전개를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또 다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희 정부에서도 육아비와 교육비를 가능하면 재정 형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회화해 나가야 한다, 개인 부담이 너무 큰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것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요.

다만 그것을 재원 형편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저소득층부터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의 정책 방향인데, 셋째 자녀를 지원하자는 이 법안 자체의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시급한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인영 위원 그것은 그런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접근 자체가 공적 영역에서 이것을 확대하고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순방향의 발전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국정 전반에 걸쳐서 사회 문화와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고, 또 근본적인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막대한 돈

이 들어가야 되어서 이것은 보다 특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대책을 종합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다시 드리면, 저출산의 요인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위원장대리 지병문 이인영 위원님, 혹시 미진한 것은 보충질의 때 하십시오, 지금 배쯤 됐으니까요.

○이인영 위원 저 끝나고 2교시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지병문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교육부가 국사교육발전위원회를 가동시켰는데, 이것을 적극 가동시키면서 좁거기에 대한 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그리고 그 중에서 우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근·현대사를 가르치는 것은 올해 하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요, 제가 이제 그것만 묻고요. 그다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2개 결의안과 9개 법률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한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고,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사편찬위원장이 발전위원회에서 10여 차례 모임을 갖고 29일에 여러 가지를 교육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부총리 말씀은 중학교 사회 과목에서 역사를 분리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고교 한국 근·현대사는 부교재를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배우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리고 국사 교육과정 개편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예, 교육과정 개편을 하시겠다고 그랬고요.

공무원 시험에 국사 포함하는 문제,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것은 중앙인사위원회 등 다른 부처 소관인데요, 지금 정부 내에서 그 쪽 맡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국사다 헌법이다 이런 과목을 시험 과목에 넣어 왔는데 이게 지나치게 단편적 지식만을 암기식으로 묻는 형식이 되어 가

지고 학원 의존도만 높이고 수험생들의 부담만 늘려 주었고, 고급 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판단력을 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헌법 시험이나 국사 시험, 이런 개별 과목을 다 없애 버리고 공직적격성평가지험이라고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력을 요하는 시험 체제로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고급 공무원들이 갖춰야 할 역사 소양에 관한, 특히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현재 면접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사에 관한 분야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물론 청소년기에 국가관이라든가 역사관, 정체성, 뿌리 교육, 이것은 지나고 나면 각인되기가 힘들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기, 초중등 보통교육에서 배워 와야 되거든요.

그것 배워 오면 자연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별도 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지요. 지금 별도 학원에 다닌다, 이런 것은 그것을 시험 과목에 넣지 않기 위한, 모범답안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춘 앵무새 같은 답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어와 국사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근원적인 뿌리이기 때문에, 단계가 있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부총리께서는 수능 필수 과목으로 하면 또 하나의 부담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담이 가더라도 꼭 우리나라의 민족으로서 각인이 되어서 뿌리를 알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충성심과 국가의 애국관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세계 속에 뻗어 나가려면 필요한데 이것은 그 단계에서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필수 교과가 아니면 학부모나 누가 공부를 시킵니까? 안 시키지요. 누가 또 하나라도 배우려고 들겠습니까? 선택이다 보니까 선택을 점점 기피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지금 전부 다 사라질 정도까지 됐거든요.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9급 과목 역시 학생들에게 시험 부담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배워야 될 것은 꼭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 한다, 여기에 핵심을 맞춰 주시기를 교육부총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정부안에서 대학의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학협력전담교원을 둔다고 했습니다.

전공 교육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서 그 법안을 마련한다고 보는데요. 산학협력전담교원을 두는 것은 고등교육기관 교원의 임무에 있어서 교육 및 지도 및 학문의 연구와는 별개로 구분되는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가치와 부합된다고 봅니다, 대학의 근원적인 교육과 연구 기능에 대해서요.

대학은 산업 인력을 찍어내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학 협력 활성화는 학문 연구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 뒤에 사후적 결과로서 추구되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묻고 싶은 것은, 학·석사학위통합과정의 신설입니다.

이것은 대학이 자교 우수 학생들의 타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각 대학들이 경쟁력 있는 중점 학과에 대해서 미리부터 자교 학생들에게 배정을 해서 타 대학 출신자들에 대해서 대학원 문호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인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더 침해한다, 다양한 발전을 이루어야 될 대학과 대학원 간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산학협력전담교원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의 산학 협력 정도는, 예를 들면 현장의 경험이 있는 교수가 대학교 이공계 학부에 와서 강의를 한다든지 또는 대학생들이 기업 현장에 가서 두세 달 실습을 하는 정도로만 그 협력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산업 현장의 수요와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질적으로 격차가 너무 심해서 대학교 졸업한 이공계 학생들을 데려다가 산업 현장에서 2~3년 다시 교육을 시켜야만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쓸 수 있다, 그런 산업계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산학 협력은 기업의 제품 개발 과정, 또 검수 과정이 바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과정에서 동시에 기업이 쓰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장비와 시설을 학교 현장에서 기업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공부하는 형태의, 한국산업기술대학에서 쓰고 있는 그런 방법을 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산학 협력은 한 반에 학생이 5명에서 10명 정도밖에 안 되고, 한 5, 6개가 넘는 교육 과정을……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산학…… 그 취지라든가 충분히 압니다, 그 필요성도 알고요.

그런데 교원을 전담하는……

(지병문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런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서 모셔다가 그것을 맡겨서 운영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분들에게 교수 자격을 주지 않고서는 그런 분을 모셔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산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석사 통합 문제는 다양한 학사 운영을 위한 필요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타 학교 학생의 대학원 진학을 막는 다든가 하는 그런 부작용은 운영과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위원회 그 부분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서 명확히 하자는 입장, 그러나 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설치 근거는 명확하게 하고 운영은 대학의 자율을 강조하는 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취지와 방법이라고 제시한 것은 보기에는 일응 타당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이겠구나 나타나지만 그 뒷면에 여러 가지 본질을 흐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역기능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정봉주 의원의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는요, 그 법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세입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안의 재원 확보 방안은 국가재정 운용 계획상 교육 분야 지출한도를 초과해서 확보되지 않는 이상 실익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교

육 분야 지출한도 추가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그때에는 초·중등 또 고등교육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것이 또 염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다른 재원을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할 수도 없고 해 봐야 교육부 다른 예산 특히 고등교육예산만 계속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김영숙 위원 또 하나 정봉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인데요. 초·중등학교 교원 양성기관인 국·공립 교육대학, 사범대학 여기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들 고등교육기관에…… 총 40개교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생기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면 복지가 되고 좋지요. 그런데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특수학급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량에 맡겼는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별 학생 수요를 예측해서 이것을 재량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초·중등교육법과 형평에도 맞고요. 이것에 대해서 부총리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정봉주 의원의 특수학급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 개정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꼭 고등교육법을 고치는 것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제57조와 유아교육법 제15조를 보완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숙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거든요. 우리의 인적 자원이 그야말로 수요와 공급을 그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2010년부터 나타나는데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늘려야 되는데 그 방안으로 셋째의 학비 부담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그것보다도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보육 문제, 육아 문제, 교육 문제, 그다음에 사회에서의 자기의 자아실현입니다. 이 네 가지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선 국가가 저렴한 비용으로 아기 낳았다 하면 한 달 만에 맡길 수 있는 곳, 한 달 만에 맡길 데가 없습니다. 아기 낳으면 생업에도 나가야 되고, 자기 직장이 있는데요. 한 달 만에 맡길 수

있고, 복지시설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적극 여성부와 연대해서, 우리가 인적 자원을 양성해야 되니까 국가가 지원해 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한 달이면 맡기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을 적극 확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향을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정부에서도 똑같은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안에도 저출산 교육관련 대책팀을 만들어서 전체 정부의, 청와대에 설치되어 있는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와 함께 연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그 재원을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어떻게 일상적인 예산과 별도로 확보하느냐 이것에 대한 것을 찾아보고 있고, 사업들에는 지금 지적하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마 그 정책이 나가면 획기적으로 모두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거예요.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최순영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질의를 준비했었고요, 답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법 개정이나 제정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게 되면 잘못하면 누더기 법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입시부정 문제를 놓고 봤을 때도, 지금 2개 법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입시부정이 왜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한번 지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보고 본질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떤 법을 개정해도 그것을 또 어기는 다른 어떤 것들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총리께서는 왜 이렇게 입시부정이 자꾸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우리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어 하는 수준의, 소위 학부모들이 볼 때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대학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문제도 결국은 대학 개혁을 통해서, 대학을 특성화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 주고 또 세계 수준의 대학이 적어도 전국적으로 15개 정도는 되어야 중·고등학교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영 위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대를 놓고 서열화가 되어 있고 모두 좋은 대학에 보내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올라온 것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고등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도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초·중·고의 교육을 현재 재평가를 하면서 획기적인 안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그 속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글썽요, 깊이 생각을 안 했지만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지혜의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영 위원 지혜의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 “옆으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하든지 입시부정을 저지르더라도 서울대만 가면 된다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초·중·고의 교육을 보면 자기 삶의 가치를 세워 주는 교육이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정말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요. 모든 것을 다 1등, 될 수 있으면 다 1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저는 사람사람 하나가 다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재능을 발굴해 줄 수 있는 초·중·고의 교육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입시 위주로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우리 초·중·고교육에 있어서 특히 인성교육, 시민사회교육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고 중요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주호 의원 발의안을 놓고 봤을 때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중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를 했을 때 시험무효가 되는 것보다는 인성교육과 사회봉사활동, 그러면 또 형사처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근본적인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이들이 이 교육을 이렇게 받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바로 ‘아, 내가 잘못했다’ 반성하고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또 다른 무슨 생각을 하고, 채수 없다고 생각하지요. ‘나만 그랬나, 정말 채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주호 의원 발의한 안도 좋지만 이중적인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형사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같이 논의해서 이 아이들한테 어떤 처벌을 주고, 또 하나의 전과자를 만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이런 아이들한테 교육에 대한 한이 서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인성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어떤 법안을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에서 문제가 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수술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육 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재정에 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재정을 확보할까 해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개정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은 교육재정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찬성합니다. 이 개정안을 다 찬성했을 때 교육부는 재정을 안 세울 수가 없지요. 이미 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정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하나 봤을 때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제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교육예산을 어떻게 파이를 늘릴 것인가 이것에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봉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교육환경개선특

별회계법안을 놓고 봤을 때 아까 부총리께서 답변이 1조 2000억을 2007년도까지 확보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연도별 투자계획인데 2013년까지 1조 2000억 원을……

○최순영 위원 2013년까지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의 준비계획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만약 정봉주 의원이 발의한 안이 개정이 된다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조 5000억이라고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만약 이 법이 개정된다면 이 정도의 예산은 가능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다른 쪽에서 희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겠지요. 다른 쪽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목을 줄이지 않고는 특별하게 이것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에 발표한 특수교육 기본계획에 따라서 2007년까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로 한 것은 시·도교육청에다가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시달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이 법안이 발의되게 된 동기도,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이 정말 없거든요. 지난번 국감 때도 그렇고 본회의 때도 계속 주장을 했지만 그리고 지난번 계수조정에도 올렸지만 계수조정에서 깎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깎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법 개정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교육부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교육예산에, 정말 이 사회에서 소외된 곳,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예산을 세워 주고 정책을 내놓는다면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법 개정이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정봉주 의원이 발의한 안인데요, 정부에 대한 특수교육예산의 확보도 어렵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특수학급 시설이 설치된 부설학교가 사실 전무했거든요. 그런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부설학교에서

장애아동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제한하는 어떤 규정이 있지 않았나 해서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없애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수학급 문제는 그런 장애학생들이 있을 때 그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을, 부설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특수학급을 만드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영 위원** 이런 법 개정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최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임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녀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위원회에서 좋은 질의 기대하겠습니다.

○**임태희 위원** 질의가 아니고 몇 가지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궁금한 것 여쭙 보면서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정봉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특수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안에 보면 예산명세서가 죽 나와 있는데 교육부에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입각한 소요예산의 판단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임태희 위원** 보니까 총 2조 9726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각 지역별로 특수교육의 대상이 될, 특수교육의 수요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고 그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특수교육시설로 가는지 아니면 특수학급으로 가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희 위원**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되어 있지요?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 정석구** 되어 있습니다.

○**임태희 위원** 되어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 정석구** 저희 정부입법이 아니고 의원입법입니다.

○**임태희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도 의원님이 판단하신 것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 정석구** 예.

○**임태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낼 때 교육부하고 협의는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원님이 이것을 내실 정도면 당연히 소요예산의 판단근거가 있을 테고 교육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졌을 것 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가 현재 없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 정석구** 그동안 정봉주 의원님 축하하고 소요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단독발의하셨지만 단독적으로 일을 하신 것은 아니고 다만 소요 예산이 2조 5000억에서 3조까지 추산이 되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 문제 때문에 저희하고 이견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오시기 전에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재원 문제를 따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법안의 실현 가능성이……

○**임태희 위원** 좋습니다. 되었습니다. 재원 문제는 꼭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입니까? 앞으로 점점 더 이런 문제들이 커 나갈 텐데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저는 앞으로 교육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소위 교육시장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은 맡기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교육시장에 맡겨 가지고 잘 안 돌아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태희 위원** 좋습니다. 되었습니다.

재원 문제는 꼭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입니까? 앞으로 점점 더 이런 문제들이 커 나갈 텐데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저는 앞으로 교육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소위 교육시장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은 맡기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교육시장에 맡겨 가지고 잘 안 돌아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 상태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고 그 수요에 대해서 현재 수용을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파악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요.

그러면 판단하시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5개년 계획에 이 정도면 앞으로 향후 수요에 대비해서 거의 다 해결이 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어떤 수준입니까? 대부분 다 수용할 수 있는 해결이 될만한 수준이라고 보세요?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교육복지심의관 정석구** 그 정도 실질 투자가 가능하다면 대부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임태희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쭙 볼게요. 교육부에서는 지금 특수학급으로 운영하는 방법하고 특수학교로 운영하는 방법하고 어느 것이 더

교육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봅니까?

물론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특수학급에 편입시켜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 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가보면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데 보면 나름대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여기 수용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가급적이면 특수학급 쪽으로, 가장 좋기는 통합학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고 적어도 정상인들 사이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아가면서 가급적 적응훈련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수학교로 운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통합교육으로 가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그렇게 하는 것으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임태희 위원 제가 보기에선 실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으면 각 지방이 대체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해서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임태희 위원 그다음에 정부에서 낸 고등교육법중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총리님께서 말이지요, 그동안 경제부처에서 다년간 많은 경험을 하시고 또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을 하셨는데 가령 공적인 활동을 안 하시고 은퇴하셨다 이겁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여생을 초등학교, 아니면 대학이 아니라도 지역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과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학생들을 위해서 쓰고 싶다, 제도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가령 부총리님께서 그런 입장이 되셨다고 하면……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대

학의 경우에 차관급 이상 직책을 지낸 사람들을 대학교의 교수로 운영하는 브레인풀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도 2차 대전 때 일본에서 전쟁 퇴역 장성들에게 아예 향리에 초등학교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렇게 활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기존의 교사 자격이나 임용 기준 이런 것하고 충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약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보완하더라도 이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서 대학에서는 이것이 가능한데 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안 되는가, 방금 전에 제가 여쭙 보니까 진수희 위원님도 이다음에 대학보다는 오히려 그런 데 가서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식의 전달보다 정말 필요하다면 초·중·고등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과제로 함께……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 또 교사 자격, 교원 자격 제도에 의해서 엄격하게 교직이 제한되어 왔고, 이제 그것을 개방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임태희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우선 교장을 초빙제로 하면서 공모형 초빙제를 지금 처음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경우에도 첫 단계는 교장 자격, 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지나치게 연공서열에 의존하지 않고, 응모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초빙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가면서 사회의 빠른 변화 이런 것들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잘 지도될 수 있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방과 후 학습제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 경우를 보면 그것이 학부모들에 의해서 일종의 지역의 커뮤니티센터 형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특수활동을 거의 학부모들

이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해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태희 위원 토니블레어가 영국에서 97년도에 집권을 하고 교육 개혁을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 내겁니다. 그 사람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나오는데 하나는, 영국 사람들이 지금처럼 수학하고 과학을 공부 안 해 가지고는 후진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수학하고 과학 교육을 초등학교에서부터 굉장히 강화합니다. 커리큘럼을 늘려요.

그다음에 컴퓨터를 자유스럽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겠다, 이것이 두 번째 공약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교육을 아주 강화해서 심지어 학교 공작실이니 미술실을 전부 컴퓨터실로 바꿔 가지고 하는 학교를 제가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화, 물론 초·중·고등학교 얘기입니다마는 아이들의 교육은 학교에서 전담할 수 없다, 사회와 가정과 학교가 삼위일체되어서 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 중에서 혹은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학교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와서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받아요. 제가 그때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직의 임용이 제도적으로 폐쇄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융통성을 주는 형태로 나가니까, 교직이라는 것이 그런 예측 가능성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일순간에 깨면 그것도 안 되지요. 신뢰를 잃는 것이니까요.

그 기초를 유지하면서 이제 우리도 서서히, 아마 앞으로 인구 구조도 변해 가고 사회에서 은퇴하셨다 해도 얼마든지 제2의 인생을 이런 것을 통해서 가꾸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국력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쪽으로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하면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 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존경하는 임태희 위원님께서 처녀 질의를 하셨는데 아주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 위원 오늘만 해도 유아교육법중개정법률안,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이것이 전부 교육예산 확보와 관련된 고민들입니다. 교육예산을 보면 결국은 늘 초·중등 교육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투자되고 유아교육과 고등교육에는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또 장애 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안 된다는 것이 고민인데요.

정부가 과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늘 임기응변적으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문제로 보면, 아마 제 기억으로 교육예산을 GDP 대비 6% 확보하겠다, 이것이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을 것이고 당시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대선공약이 GDP 대비 7%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의 부처라든지 우리 국회의 위원회를 보면 경제부처 위원회에서는 대개 조세 감면, 세금을 줄여 주는 쪽으로 가고 교육이나 복지 쪽은 계속 예산을 늘리는 요구를 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복지위원회나 교육위원회 수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교육예산을 확대해야 된단든지 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은 아마 지금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부가 초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법안을 내고 자꾸 교육부하고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접근으로 해결되겠느냐……

그 측면에서 과연 GDP 대비 교육예산 6%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뒤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했느냐, 이제 3년째 접어들었는데 이것을 반성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 자꾸 부분적으로 개별 법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께서 “아이를 마음 놓고 낳으십시오. 기르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이 비슷한 광고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느냐…… 유아 교육 문제만 해도 유아교육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했으면, 사실 유아 교육을 정부가 책임지면 우리가 오늘 많은 논의를 하게 되는 셋째 이후 아이들 교육비는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대책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큰 그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얘기하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인데 교육예산과 복지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면 어떤 경우에는 세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걷어야 될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이 접근하고 있다, 이 부분을 부총리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체적인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을 말씀드릴 생각이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던 중에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국사교과서의 필수교과목화라든지 국가고시에 국사교과목을 포함시키는 2건의 결의안인데 이 부분은 내용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단일안으로 합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원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예,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백원우 위원 지금 정족수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아까 양당 간사님하고 위원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던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공청회 부분들을, 지금 이 자리는 정족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일정을 보니까 28일 오후에 유기홍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 공청회 후에 시간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로 양당 간사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모아서 다음 상임위 때는 꼭 의결하셔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21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보류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달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 권철현 위원께서 서면질의 또는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
【제안설명서】

학교 교육 및 국가고시 등에서의 국사 과목 비중 제고 촉구 결의안

제안연월일 : 2005. 4. 19

제안자 : 박성범 의원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학교 교육 및 국가고시 등에서의 국사 과목 비중 제고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박성범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정부 차원의 이른바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통해 고구려사는 물론 발해사와 고조선사까지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가속화하여 우리나라 역사의 근간은 물론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2006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신청본들이 제1차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이 있었던 2001년도보다 더욱 왜곡 정도가 심하며 정부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정부의 중국과 일본 정부에 대한 외교적 대응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올바른 역사 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초·중등교육과정 및 고등교육과정에서 국사교육의 비중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마저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주관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사시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민간기업 등의 신규 및 승진임용 시험에서도 국사시험 과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자의 역사의식이 저하되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 정립과 정책 수립 및 대외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며 국민들의 ‘역사관’ 구성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초·중등 및 고등교육과정에서 국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공무원 신규 및 승진임용시험에서 국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도록 조치하고 정부 투자기관·산하기관 및 민간기업 등의 직원 신규 및 승진임용 시험에 대해서도 국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담당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공직자 등에게 역사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 정립과 정책 수립 및 대외협상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1. 정부는 초·중등교육과정 및 고등교육과정에서 국사교육의 비중을 높일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사시험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시험에서 국사시험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4. 정부는 정부 투자기관과 산하기관, 민간기업 등의 직원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시험에서 국사시험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학교 교육 및 국가고시 등에서의 국사 과목 비중 제고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

도 있게 검토를 하시어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안연월일 : 2005. 4. 19

제안자 : 안상수 의원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저에 대한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유아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이미 OECD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산기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가용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고 또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사회적·국가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되므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다양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셋째자녀 이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유아교육의 질적향상을 꾀하고 선진복지국가로의 진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장려에 기여하려는 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안연월일 : 2005. 4. 19

제안자 : 정봉주 의원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노원갑 정봉주 의원입니다.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확대로 인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진일보한 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 계층을 수용·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시설 및 기관 등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가 부진하여 많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이와 같은 교육환경을 접하지도 못한 채 소외·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2004년 4월 현재 전국 141개의 특수학교에서 23762명, 3448개의 유·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4366개 특수학급에서 28002명, 일반학급에서 3610명 등 총 55374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3~17세의 학령기 장애아동의 약 33%인 8만여 명이 특수교육기관에서 특수교육 수혜를 받고 있는 형편이고 나머지 일반교육이 가능한 장애아동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특수교육 수혜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아들의 교육기본권을 충족시키고 나아가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高等教育法中 一部改正法律案

제안연월일 : 2005. 4. 19

제안자 : 정봉주 의원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노원갑 정봉주 의원입니다.

고등교육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는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교원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연수 시에 그 연수시간이 60시간 이상일 때 반드시 특수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초·중등학교 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는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를 부설하도록 하고 이들 부설학교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국·공립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 부설 초·중·고에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특수학급을 전혀 설치·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예비교원들이 사전에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없이 양성·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부설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예비교원들이 학생신분부터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책무를 가지고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하려는 것과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

제안연월일 : 2005. 4. 19

제안자 : 김춘진 의원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입니다.

제가 공동발의한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학은 새로운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교육소비자 중심의 대학서비스로의 발전 전환을 줄기차게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현 고등교육

법은 교육공급자인 대학의 설립·경영자나 교원의 권리 중심으로 규율·보장되고 있을 뿐 교육소비자인 학생들의 배울 권리 즉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육당사자들 간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육부실에 대하여 그 침해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권리구제조치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휴강문화를 바로잡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을 제안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 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高等教育法 一部改正法律案

제안연월일 : 2005. 4. 19

제 안 자 : 이규택 의원

이규택 의원입니다.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휴대전화기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자 “高等教育法 一部改正法律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방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請暇委員(1人)

최 재 성

○委員아닌出席議員(1人)

박 찬 석

○出席專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류	충	현
전 문 위 원	천	병	호

○政府側參席者

교육인적자원부			
부 총 리	김	진	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차 관	김	영	식
정책홍보관리실장	구	관	서
학 교 정 책 실 장	윤	웅	섭
인 적 자 원 관 리 국 장	이	종	갑
학 교 정 책 심 의 관	류	영	국
교 육 복 지 심 의 관	정	석	구

○出席委員(16人)

구 논 회	권 철 현	김 영 숙	백 원 우
유 기 흥	이 군 현	이 인 영	이 주 호
임 태 희	정 몽 준	정 봉 주	조 배 숙
지 병 문	진 수 희	최 순 영	황 우 여